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(2공구)]

- 점검일시 : 2020.05.15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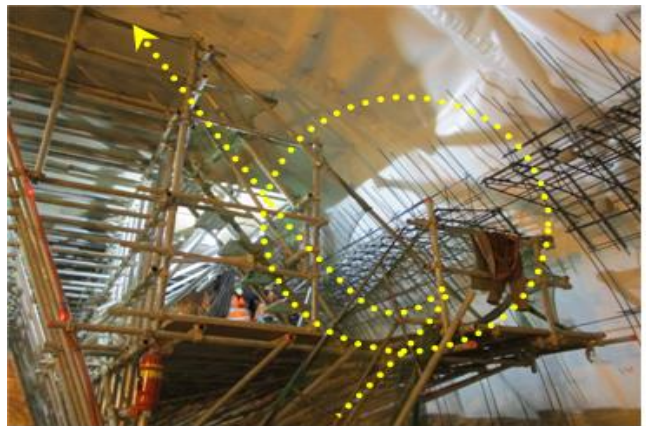
### 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본선(성산방향)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라이닝 폼은 레일과 레일을 결속, 레일 받침을 밀실하게 설치바라며,  
 - 대차 상부로 올라가는 임시 가설계단은 작업 환경에 따라 설치 및 제거를 수시로 하는 계단으로 설치 시에는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임시고정장치 설치를 검토하고,  
 - 상부 작업발판 사이 개구부는 작업도구 및 자재가 낙하할 경우 하부 통로 근로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### 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본선(성산방향) 철근조립 작업 대차는 1단 가설계단에서 2단 가설계단으로 올라가는 답단에 강관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 전도 우려가 있으니 위치 이동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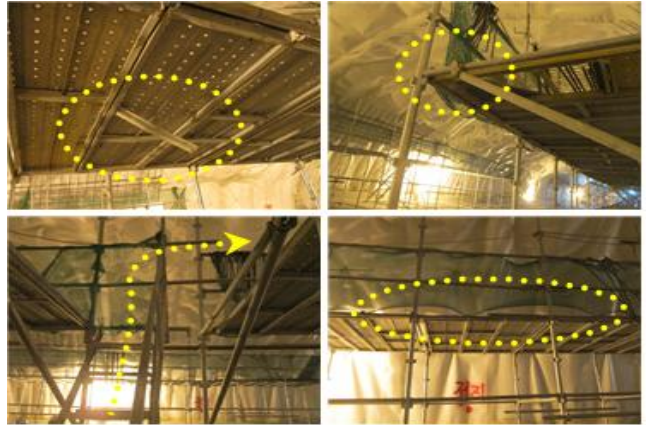
○ 가설비계 안전(토목부)

- 본선(성산방향) 라이닝 철근 조립을 위해 설치한 가설비계는 아래사항을 보완 바람.

- ① 파손된 작업발판은 교체
- ② 비계조립시 클램프 등 전용철물 사용
- ③ 가설계단 안전난간으로 상부 작업발판 진입이 어려운 구간 통로 확보
- ④ 수직방망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보완

⑤ 가설계단에 설치된 수직강관은 지면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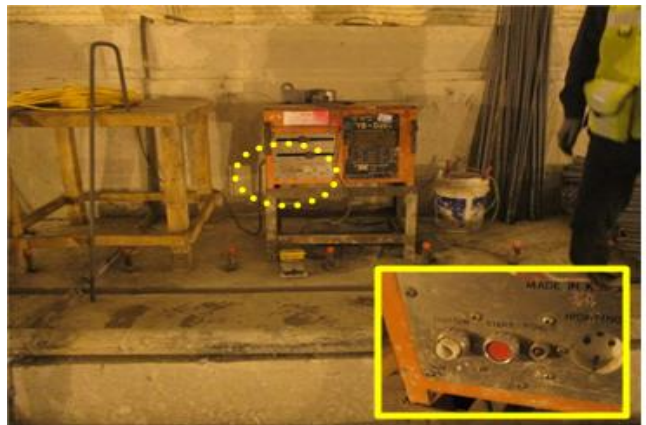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13((2)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본선 (일직방향) 철근가공에 사용하고 있는 철근 절곡기는 전면 비상정지 장치가 파손되어 있으니 언제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완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2(철근절단기 및 절곡기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본선(일직방향) 라이닝 폼은 상부 안전난간에 설치된 수직방망이 일부 파손되어 자재가 걸려 있는 등 낙하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걸려 있는 자재는 제거하고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방망을 밀실하게 고정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일직시점 90SPAN 지점 망암거 설치를 위해 굴착작업 중인 굴삭기는 전면 유리가 파손되어 있어 외력에 파손될 경우 운전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파손된 유리는 보완 바람.  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본선(일직방향) 라이닝 폼 하부는 자재가 배수로에 적치되어 있어 지하수가 통행로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 원활하게 배수 되도록 보완 바람.

